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 ⑥ (생략)</p> <p><신설></p> <p>⑦·⑧ (생략)</p> <p><신설></p> <p>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p> <p>② ~ ⑦ (생략)</p> <p>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p> <p>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요구서 중 서류등의 제출 요구서는 송달받을 자가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받기로 미리 동의하는 경우 그 이후부터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등의 제출 요구서를 전자시스템에서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p> <p>⑧·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p> <p>⑩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출석할 장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원격출석(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출석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은 그 출석할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 선서 및 증언·감정·진술한 것으로 본다.</p> <p>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① 중요한 안건심사,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p>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② <u>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u></p> <p><신 설></p> <p>제15조(고발) ① ~ ③ (생략)</p> <p><신 설></p> <p>④ <u>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u></p>	<p><u>1.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u></p> <p><u>2.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u></p> <p><u>3.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거절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u></p> <p><u>4.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u></p> <p><u>5.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u></p> <p>② <u>제5조제8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정보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송달기한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u></p> <p>③ <u>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서류등을 제출한 자, 제출 요구받은 서류등을 고의로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p>제15조(고발)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의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u></p> <p>⑤ <u>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u></p>
---	---